

제 549 호  
1976. 4.8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 
편집 :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 
전화 75-7834  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 
전화 75-6090

# 시 보

## 차 례

### ◎ 조 례

제 1025 호	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 설치조례 개정조례.....	3
제 1026 호	서울특별시립위생연구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.....	4
제 1027 호	서울특별시 중기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.....	4
제 1028 호	서울특별시종합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.....	5
제 1029 호	서울특별시립보건의소설치조례개정조례.....	5
제 1030 호	서울특별시구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.....	7
제 1031 호	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.....	7

(이면계속)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서울특별시

◎ 규 칙	
제 1566 호	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..... 10
◎ 훈 령	
제 442 호	서울특별시 보건소위임전결규정중개정..... 14
◎ 공 고	
제 77 호	도시계획시설(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..... 14
제 79 호	전기용품제조업 허가취소..... 18
◎ 예 규	
제 324 호	서울특별시회계사무취급요강중개정규정..... 19
◎ 정 정	..... 21

**조** **례**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시장 구자춘

1976년 4월 8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025 호

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설치조례  
개 정 조 례

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설치조례

제 1 조 (설치) 지방사업의 시행과 지방시공지를 보호관리하고 녹지대 및 가로수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(이하 "사업소"라 한다)를 둔다.

제 2 조 (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) 사업소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은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.

제 3 조 (직무) 사업소는 다음사항을 관장한다.

- 1. 지방조림과 녹지대의 조성 및

유지관리

- 2. 노변질개지 미화에 관한사항

제 4 조 (공무원) 사업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3급을유인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②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는바에 의한다.

제 5 조 (하부조직 및 사무분장) 사업소의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6 조 (지소) 소장은 지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소를 설치하여 소속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.

제 7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규정)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조례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 
립위생연구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  
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

76년 4월 8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026 호

서울특별시립위생연구소설치  
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립위생연구소설치조례를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조례제목 및 제1조중 "위생연구소"  
를 각각 "보건연구소"로 한다.  
제2조(위치) 연구소의 위치는 시장이  
파로 고시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직무) 연구소는 보건연구소법  
제4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 
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규정)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 
종전과 서울특별시립 위생연구소의  
위치들이 조례에 정한 절차에  
의한 서울특별시립보건연구소의 위치

로 본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 
중기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판  
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

76년 4월 8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027 호

서울특별시중기관리사업소설치  
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중기관리사업소 설치조례  
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설치) 각종 중기의 보유 및  
관리와 중기등록에 관한사항을 관장  
하게 하기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기관  
리사업소(이하 "사업소"라 한다)를  
둔다.

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 
한다.

4. 각종 중기등록에 관한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
한다.

<p>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종합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</p>	<p>정원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 제 5 조 ( 조직 및 사무분장 ) 사업소의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시장 구자춘</p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6년 4월 8일</p>	<p>제 6 조 ( 시행규칙 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.</p>
<p>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028 호</p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종합종말처리 사업소설치조례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
<p>제 1 조 ( 설치 ) 한강으로 방류되는 오수 기타의 하수의 종말처리를 하기 위하여 종 합종말처리사업소 ( 이하 " 사업소 " 라 한다 ) 내 둔다.</p>	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립보건의소 설치조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</p>
<p>제 2 조 ( 위치 ) 사업소의 위치는 시장 이 따로 고시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시장 구자춘</p>
<p>제 3 조 ( 직무 ) 사업소는 다음사항을 관 장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6년 4월 8일</p>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하수의 종말처리</li> <li>2. 분뇨의 위생처리</li> <li>3. 방류수의 수질검사</li> <li>4. 하수처리의 조사연구</li> </ol>	<p>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029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립보건의소설치조례 개정조례</p> <p>서울특별시립보건의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
<p>제 4 조 ( 공무원 )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두되, 소장은 3급을류인 일반직 지 방공무원으로 보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보건의소설치조례</p>
<p>② 사업소에 소장 이외에 두는 공무 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</p>	<p>제 1 조 ( 목적 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립보건의소 ( 이하 " 보건소 " 라 한다 )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</p>

<p>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 ( 명칭 . 위치 및 관할구역 ) 보건소의 명칭 . 위치 및 관할구역은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.</p> <p>제 3 조 ( 직무 ) 보건소는 보건소법 제 4 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.</p> <p>제 4 조 ( 공무원 )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되 . 소장은 3급갑류인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 ② 보건소에 소장 이외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제 5 조 ( 하부조직 및 사부분장 ) 보건소의 하부조직 및 그 사부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 6 조 ( 지소 ) ① 보건소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구에 지소를 둘 수 있다. ② 지소의 명칭 . 위치 및 관할구역은 시장이 따로 고시하고 . 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</p>	<p>에 의한다.</p> <p>제 7 조 ( 사용료 또는 수수료 ) ① 보건소에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 불 받은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② 제 1 항의 사용료와 수수료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.</p> <p>제 8 조 ( 시행규칙 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 ( 시행일 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② ( 경과규정 )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보건소의 명칭 .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조례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물 이에 공포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청 구자춘 1976년 4월 8일</p>
---	---

○서울특별시조례제 1030 호

서울특별시구출장소설치  
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구출장소 설치조례중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 제 2 항 단서규정을 다음과  
같이 신설한다.

“다만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의  
변경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고시하는  
바에 의한다.”

제 2 조중 제 4 항과 제 5 항을 다음과  
같이 한다.

④출장소에 총무과, 민방위과, 시민  
과, 세무과, 청소과, 산업과, 토목과와  
건축과를 둔다. (다만, 친호출장소에  
한하여 주택과를 둔다)

⑤총무과장, 민방위과장, 시민과장,  
세무과장, 청소과장, 산업과장과 주택  
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토목과장  
은 지방토목기사로, 건축과장은 지방  
건축기사로 보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
한다.

주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 
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를  
이래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인

76년 4월 8일

○서울특별시조례제 1031 호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  
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 들 각각 별지와  
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
한다.

< 별표 1 >

-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-

총 계	16,221
일반계	15,413
별정직계	328
비서 (3월 상당)	5
동장 (3월 상당)	313
아동복지지도원 (3월상당)	1
비서 (4갑 상당)	1
한강안전관리대요원 (3월상당)	1
" (4갑상당)	4
" (4월상당)	3
2급 내지 5급 계	11,263
2급갑류 계	1
2급을류 계	12
3급갑류 계	58
3급을류 계	538
4급갑류 계	1,590
4급을류 계	1,732
5급갑류 계	2,878
5급을류 계	4,454
기능직계	881
고용원계	2,941
소방직계	808
소방감	1
소방령	3
소방경	13
소방위	61
소방사	58
소방원	672



0480

직군별 기관별	별 정 직							입 반 직									기 능	고 용	합 계
	3갑	3을	4갑	4을	5갑	5을	소계	2갑	2을	3갑	3을	4갑	4을	5갑	5을	소계			
합 계	1	323	18	64	58	672	1,136	1	12	58	538	1,590	1,732	2,878	4,454	11,263	881	2,941	16,221
본 직		5	1				6		1	1	188	348	377	30	16	961	57	543	1,567
구. 출장소										15	203	657	790	1,240	1,379	4,284	44	826	5,154
등		313					313				30	254	180	1,255	2,773	4,492	42	351	5,198
지하철본부								1	2	7	19	63	40	19	1	152	646	140	938
산업대학											1	5	5	3		14		31	45
종합 중립 처리사업소											1	4	10	10				20	45
기타사업소		2	4	3			9		9	35	96	259	329	320	285	1,358	92	1,014	2,448
소방본부	1	3	13	41	58	672	808							1	1	2		16	826

계 549 호

시

보

1976.4.8

21-9

219

규 칙

서울특별시 오물수거 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 
1976년 4월 8일

㉞ 서울특별시규칙제 1566 호

서울특별시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

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 19조 제 3항중 "별표 1에 의한 영수증표와"를 "별지 제 27호 서식(병)에 의한 분뇨수거수수료 영수증과"로 한다.

제 20조 제 2항중 "일반분뇨수거수수료 영수증표 수불대장"을 "일반분뇨수거수수료 영수조서 수불대장"으로 한다.

제 28조 제 3항을 삭제한다.  
별지 제 22호서식, 별지제 27호서식(갑), 별지제 27호서식(을), 및 별지제 27호서식(병)을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 1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197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제 22호서식>

일반분뇨수거수수료영수조서수불대장

월 일	적	요	수령매수	교부매수	잔 매 수	수명자인

별지 제 27 호 서식 (갑)			
영 수 조 서 (원 부)			
청 소 비 특 별 회 계 ( 분 입 수 거 수 수 로 수 입 )			
납 부 자	주 소	서울특별시 구 동 가 번 제 호	
	성 명		
수 거 량		금 액	비 고
총			1 통 = 18 2 50 원
상기 와 같 이 영 수 함.			
19 년 월 일			
서울특별시 구 . 출 장 소 청 소 비 특 별 회 계 분 입 수 입 금 출 납 원 인			
취 급 자 ○ ○ ○ ( 인 )			

21-12

제 549 호

사

보

1976.4.8

별지 제 27 호 서식 (울)

분 노 수 거 수 수 로

청소비특별회계 (수입보고서)

납 부 자	주 소	서울특별시 구 동 로 가 번지 호		
	성 명			
수 거 량	금 액	비 고		
통		1 통 = 180 50 원		

상기와 같이 영수함.

19 년 월 일

서울특별시구 . 출장소 청소비특별회계

분임수입금출납원

인

취급자

○

○

○

(인)

<p>&lt;별지 제 27 호서식&gt; (병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분노수거수수료영수증</u></p>		
납부자	주소	서울특별시 구 동 가 번지 호
	성명	
수거량	금액	비고
통		1. 통 = 18 8 50 원
<p>상기와 같이 영수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구. 출장소 청소비특별회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분임수입금출납원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급자 (인)</p>		

훈 령

서울특별시 보건소위임전결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  
76년 월 일  
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

◎ 서울특별시훈령제 442 호

서울특별시 보건소위임전결규정중 개 정  
서울특별시 보건소위임전결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위임전결구분중 2. 민원봉사실  
민원처리계 2. 식품관계민원란 및  
3. 환경관계민원란을 각각 삭제하  
고, "4. 의약관계민원" 및 "5. 기타  
민원"을 각각 "2. 의약관계민원"  
및 "3. 기타민원"으로 한다.

별표 위임전결구분중 3. 위생과란을  
삭제하고 "4. 보건지도과" 및 "5. 방역과"  
를 각각 "3. 보건지도과" 및 "4.  
방역과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77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실시  
계획공람공고

1. 건설부고시 제 2493호(66. 6.21)로 고시된 신촌역-과도교간 도로확장공사구간내의 저속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제 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 4. 8

서울특별시장

공 략 개 요

- 1. 사업장위치 : 서대문구 신촌동  
105-1 ~ 107-5
- 2. 사업의종류와명칭 : 신촌역 - 과도교  
간도로확장공사
- 3. 사업의규모 : 가. R= 30 m  
나. L= 350 m
- 4. 사업의시행자 : 서울특별시청
- 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:  
76.3.15 ~ 77.6.30
- 6. 사용또는수용할토지 : 별첨토지조서
- 7. 토지또는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  
법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  
주소 . 설명

사 업 추 진 개 요

- 1. 사업명 : 연세대 - 과도교간도로  
확장공사
- 2. 사업설명 : 본공사는 75년 철도  
청에서 서울특별시 수탁공사로  
시행완공한 과도교와 75년당  
구에서 시행한 신촌역 - 과도교  
간도로정비공사 ( 폭 15 m 완공 )  
와 연결된 연세대 - 과도교간의

도로확장공사로서 현재폭  
8 m 를 30 m 로 확장하고  
신촌역 - 과도교간 현재폭  
15 m 를 25 m 로 확장하  
여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 
과 가라로방면의 진행차  
량을 분 도로로 우회시켜  
신촌로다리 교통혼잡을  
해소코져 함.

- 3. 사업개요 : L= 350m B= 30m  
하수도 (D=45) L= 560m  
BOX(2x2) L= 80 m  
보 차도경계부력및측구  
L= 760 m  
아스팔트도강 A= 56 (m)

4. 보 상

- 가. 토 지 : 총 2,790.7 경  
( 33 필 )  
연세대소유토지 2,471.2명 (21필)  
기타사유지 11.2명 (2필)  
시 유 지 298.0명 (5필)  
국 유 지 9.3명 (5필)
- 나. 건 물 : 총동수 10동  
( 93.5 경 )

등기건물 3동 (32.5명) 무허가건물 7동 (61.0명) 5. 시행청 : 서대문구청 6. 시행기간 : 76.3.15 ~ 76.6.30	7. 재 원 : 총사업비 100,000,000 원 8. 비 목 : 건설사업비, 도로관 리, 도로사업, 도급시설비
--	---

공 사 건 물 가 격 조 서

번호	소재지	구조	수용면적	사 경		소 유 자	
				단가	금액	주 소	성 명
1	신촌동 116-9	목조와즙	8.5		312,120	신촌동 116-9	양 재 갑
2	" 116-4	"	12.0		397,440	" 134	이 천 환
3	" 116-5	"	12.0		159,840	" 134	연세대학교
계	3 동		32.5		869,400		

토 지 조 서

순 위	소재지	분할건표시			부활후표시 (부활용대장)			소 유 자	
		지 번	지 목	지 적	지 번	지 목	지 적	주 소	성 명
1	신촌동	105-1	대	2,167.0	105-23	대	22.0	신촌동 134	연세대학교
2	"	"	"	2,167.0	105-24	"	6.0	"	"
3	"	107-2	"	306.0	107-17	"	270.0	"	"
4	"	107-3	"	246.0	107-19	"	3.0	"	"
5	"	107-6	도로	84.0	107-20	도로	35.0	"	"
6	"	107-7	대	511.0	107-21	대	476.0	"	"



순 위	소재지	분할전표시			분할후표시 (추용대장)			소유자	
		지번	지목	지적	지번	지목	지적	주소	성명
7	신촌동	107-9	대	132.0	107-22	대	74.0	신촌동 134	연세대학교
8	"	107-16	도로	62.0	107-23	도로	18.0		서울시
9	"	116-9	대	9.0	116-49	대	8.2	신촌동 116-9	양재갑
10	"	116-47	철도	18.0	116-50	철도	0.3		국유지
11	"	116-27	대	30.0	116-51	대	3.0	신촌동 116	이양재
12	"	116-36	철도	18.0	116-52	철도	1.0		국유지
13	"	116-38	도로	35.0	116-53	도로	8.0		서울시
14	"	90-6	"	80.0	90-7	"	11.0		연세대학교
15	"	92-10	"	112.0	92-15	"	56.0		"
16	"	92-12	"	266.0	92-12	"	258.0		"
17	"	92-5	"	7.0	92-5	"	6.2		"
18	"	89-12	하천	179.0	89-12	하천	76.0		서울시
19	"	124-12	도로	432.0	124-13	도로	182.0		"
20	"	"	"	432.0	124-16	"	15.0		"
21	"	118-5	철도	19.0	118-8	철도	4.0		국유지
22	"	산9-1	임야	48,132.0	산9-80	임야	271.0		연세대학교
23	"	116-26	철도	3.0	116-26	철도	3.0		국유지
24	"	116-48	"	1.0	116-48	"	1.0		"
25	"	117-1	대	18.0	117-1	대	18.0		연세대학교
26	"	130-1	"	3.0	130-1	"	3.0		"

순 위	소재지	분할전표시			분할후표시 (부수용대장)			소 유 자	
		지번	지목	지적	지번	지목	지적	주 소	성 명
27	신촌동	116-2	대	6.0	116-2	대	6.0		연세대학교
28	"	116-5	"	34.0	116-5	"	34.0		"
29	"	116-4	"	43.0	116-4	"	43.0		"
30	"	116-6	"	11.0	116-6	"	11.0		"
31	"	116-8	"	9.0	116-8	"	9.0		"
32	"	107-4	도	188.0	107-4	도	188.0		"
33	"	107-5	대	122.0	107-5	대	122.0		"
계	33 필						2,790.7		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79 호

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

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8 조  
및 동법시행령 제 18 조제 3 호의  
규정에 외거 전기용품 제조업허가  
를 취소하고 동법 제 26 조의 규

정에 의하여 업체를 다음과  
같이 공고 한다.

1976. 4. 9.

서울특별시장

업 체 명	대표자	허가번호	소 재 지	취 소 사 유
삼광전기공업사	안해복	1-7-49	영등포구문래동 4 가 47-1	법정기간내에 형식승인미취득

예 규

서울특별시 회계사무취급요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76년 4월 8일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(인)

◎ 서울특별시 예규 제 324 호

서울특별시회계사무취급  
요강중 개정규정

서울특별시 회계사무 취급 요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물품 구매 계약중 1외 2. 물품구매  
예심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외 2. 물품구매심사

가. 심사대상: 물품의 구매에 있어  
서 단위당 가격이 50만원 이상  
총액 3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 
다음 각호의 품목에 대하여 구매  
의 적정 여부를 심사 결정하  
기 위하여 물품 구매 심사 제  
도를 운용한다.

1) 시방을 제시하여 제조하게 할  
수 없거나 다른 물품의 대입  
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 
없을 경우의 특허품 실용설안

등록품

2) 단일생산품

3) 국산 대체 불가능 품목으로서  
내자로 구입하는 수입품

4)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보장을  
위하여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 
물품 및 제조

5)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과 주  
요 물품

나. 구 성

1) 본정에서는 국(실,과)별로  
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.소  
(3급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  
는 사업소를 포함한다.)에서는  
단위 기관별로 구성하며 단위  
기관장을 심사책임관으로 한다.  
심사책임관 - 해당국(실,과)의 경  
부심사책임관 - 구매요구부서의 단  
장과장  
심 사 관 - 해당국의 과,서장  
(3인 이상)

2) 전문지식의 활용을 위하여 타  
국의 공무원권을 위촉하여 자문을  
받거나 심사에 참여시킬 수  
있다.

<p>다. 운 영</p> <p>1) 각실, 과장이 심사 대상의 구매 요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 요구서 (서식 5호) 를 심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2) 심사 요구부서의 담당계장은 심사회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 및 질문에 대한 자료 제시 설명을 하여야 한다.</p> <p>3) 부의 안전의 심사는 계약 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심사 결정서 (서식 6호) 를 구매요구서 (계약 심사 위원회 부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</p>	<p>심사 의뢰서) 에 첨부 경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서식 5호 및 서식 6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(서식 제 5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매 물품 제 조 심사요구서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6. . . .</p> <p>수신 심사 책임관 귀하</p> <p>다음과 같이 물품 구입 및 제조 기타에 관하여 심사요구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1. 품 명 : 2. 계약방법 : 3. 내 용 :</p>
--	--

품 명	규 격	단 위	수 량	단 가	금 액	비 고

첨 부: ○ ○ 과 장

(서식 제 6 호)

국 심사결정서

건 명 :

구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결정함.

결 정 내 용

주 제	결 의 사 항	비 고
<p>심 사 책 임 관 (인) 1976. . . .</p> <p>부 책 임 관</p> <p>실 사 관</p>		
<p>정 정</p> <p>시보 제 546-1 호 (1976. 3.30) 에                      게재된 서울특별시 규칙 제 1562 호                      (서울특별시 지방잡급직원규칙) 중</p>		<p>아래와 같이 오석이 있으므로 이                      를 정정한다.</p> <p>1976년 4월 1일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장</p>
항 호	오 류 사 항	정 정 사 항
부 칙 2	<p>잡급직원에 관하여 이 규칙                      과 다른 규칙, 훈령등은 이                     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                     다.</p>	<p>잡급직원에 관하여 영 및                      이 규칙과 다른 규칙, 훈                      령등은 영 및 이 규칙이                      정하는 바에 의한 다.</p>